

2021년도 제1회 법무부 제주소년원  
보호서기(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1년도 제1회 제주소년원 보호서기(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11월 22일

제주소년원장

1 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등

채용예정 분야 및 직급	채용인원	근무예정기관
골프 직업훈련교사 보호서기(일반임기제)	1명	법무부 제주소년원 (교무과)

- 임용기간 : 2년
- 단,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임용기간 연장 가능

2 담당예정 직무

- 보호소년 골프관련 이론 및 실기 교육
- 보호소년 생활지도 및 담임업무
- 감호 업무 및 기타 보호행정 등 부가업무

3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법률 제18237호, 2021.6.8.)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 제5호(대통령령 제31614호, 2021.4.6.)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05호, 2020.10.21.)

###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1.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60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학력, 성별, 지역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나. 자격 요건

- 전문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자격종목 : 골프) 1~2급 자격증 소지자
  - ※ 구, 전문·생활체육지도사(자격종목 : 골프) 자격증 포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75호) 제4조(교사의 자격직종) 분야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교사의 자격직종 12-9.스포츠에 한함
  - ※ 위 응시 자격요건(자격취득 및 갱신발급 등)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5

##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봉급표를 적용하여 연봉책정을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 「공무원보수규정」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나, 연봉 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은 별도 지급
  - ⇒ 임기제공무원(공무원 보수규정) : 연봉 상·하한액(상한액 52,083,000 / 하한액 23,856,000)
  -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의2)
  - ⇒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신청을 하며, 재직 중 계속하여 고용보험 자격 유지 가능
  - ⇒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 탈퇴 신청이 가능하며, 재직 중에는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제주소녀원	교무과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소년 직업훈련교육(골프), 생활지도 및 담임업무</li> <li>▪ 감호 업무 및 기타 보호행정 등 부가업무</li> </ul>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li> <li>○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li> <li>○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li> </ul>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행 청소년에 관한 지식</li> <li>○ 보호소년 직업훈련교육(골프)에 관한 지식</li> <li>○ 보호소년 생활지도 및 담임업무에 관한 지식</li> <li>○ 보호소년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관한 지식</li> <li>○ 보호소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자이면서 상담자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li> </ul>
------	--

응시 자격 요건	주요업무 : 보호소년에 대한 직업훈련교육(골프), 생활지도, 담임업무, 감호업무 및 기타 보호행정 등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생활스포츠지도사 및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li> <li>※ , 전문 ▪ 생활체육지도자(자격종목 : 골프) 자격증 포함</li> </ul>

## 7 시험 방법

### 가. 제 1차 시험 : 서류 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나. 제 2차 시험 : 면접 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평정 요소 중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은 **수업실연(약 10분)을 통해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를 평정 시
-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를 평정 시

## 8

###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21.11.22.(월) ~12.3.(금)	'21.11.29.(월) ~12.3.(금)	'21.12.15.(수)	'21.12.23.(목)	'22.1.11.(화)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점검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9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응시원서 교부

- 법무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2021. 11. 29.(월) ~ 12. 3.(금), 09:00 ~ 18:00

##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제주소년원 (행정지원과)	제주시 애월읍 장소로 515(우:63037)	064-797-9124	정영미

##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주소년원에 직접제출 (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며, 겹봉투에 “일반임기제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이라고 표기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개별 통보 예정,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배부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내에만 접수 가능

# 10

- 응시원서 1부(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부착) [별지서식 1호]
  - ※ 응시원서에 부착할 수입인지는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수입인지 구매 (행정수수료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 ※ 이력서 내용 중 근무경력 사항은 서류전형위원, 면접위원 위촉 시 제척·회피·기피 확인용으로만 사용
-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4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5호]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서식 6호]
- 자격증 사본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 서류전형위원, 면접위원 위촉 시 제척·회피·기피 확인용으로만 사용하며, 시험 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서식 7호]
- 응시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별지서식 8호]
-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별지서식 9호]

## 11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정한 채용을 위해 접수기간 내에 직접 제출한 응시서류와 접수마감일 소인분 된 등기우편에 한해서 유효하고 마감일 이후 제출한 서류는 모두 무효로 처리하오니 반드시 원서제출 마감일에 맞춰 제출하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및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시 자격증 원본 지참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 후 사본을 남긴 후 반환합니다.(별지서식 9호) 다만, 사본을 제출한 경우,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

시일 7일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사.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2조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에서 발  
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2021. 12. 24.(금)까지 제주소년원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자.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차.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  
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http://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소년원 행정지원과(정영미 ☎ 064-797-9124)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끝.



# 응시원서

본인은 제주소년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제주소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보호서기(일반임기제) (골프)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응시표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보호서기(일반임기제) (골프)
성명	(한글)	(한자)	
2021 년    월    일 제주소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보호서기(일반임기제)(골프 직업훈련교사)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전문경력관 나군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이 령 서

## 1.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기관	제주소년원	성 명	
		응시직급	보호서기(일반임기제) (골프)		

## 2. 응시 자격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전문 또는 생활 스포츠지도사 1~2급 (자격종목:골프)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 이력서 내용 중 근무경력 사항은 서류전형위원, 면접위원 위촉 시 제척·회피·기피 확인용으로만 사용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인)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별지서식 3]

## 기 소 개 서

채용 분야 : 제주소녀원 보호서기(일반임기제공무원)

성 명 :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 . 성 자 : (인/서명)

※ 14포인트, 굴림체(각 항목별 번호는 진하게, 기타 내용은 보통)

A4용지 2쪽 이내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별지서식 4]

근무예정직급 명칭 : 제주소녀원 보호서기(일반임기제공무원)

성 명 :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분야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 실천 방안 순으로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글자크기는 14포인트)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 .

작성자 : (인/서명)

※ 14포인트, 굴림체(각 항목별 번호는 진하게, 기타 내용은 보통)  
분량은 A4용지 3쪽 이내로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 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하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는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제주소년원장 귀하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제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응시결격 사유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유무 정보		
2	범죄경력(유무) 조회		
3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_\_\_\_\_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서식 9]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1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제주소년원장 귀하

###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